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원철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4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3월 26일

발 의 자 : 신원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박진형, 김인제, 우형찬,
서윤기, 최판술, 이윤희, 조상호,
유광상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 등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요금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이와 관련하여 마을버스 적정 요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한 바, 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 운송비용 등의 산출기초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은 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금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(안 제9조제3항)

나. 시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동법 시행규칙
-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기준 및 요금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8조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)</p> <p>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,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>제9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8조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